입법 정보

Legislation & Information

· 『입법정보』는 최근 제· 개정되어 공포된 주요 입법사항과 그 밖에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ulsan.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권 제74호
2021.10월~12월

목 차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9
타 자치단체 의원발의 조례 71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83
주요 시행 법령 115
법령해석 사례 123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41

2022년 회기력

연간 총 회의일수 6회 117일

정례회 2회 63일

임시회 4회 54일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 설연휴 1. 29. ~ 2. 2.(5일)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제227회 임시회 2.7. ~ 2.18.(12일간)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228회 임시회 3.15. ~ 3.24.(10일간)
※ 삼일절(3.1.), 20대 대통령 선거(3.9.)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결산검사(예정) : 4.11.~4.30.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어린이날(5.5.), 부처님 오신날(5.8.)
※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 5.12.~5. 13.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230회 임시회 6.9. ~ 6.20.(12일간)
※ 2022 지방선거(6.1.), 현충일(6.6.)

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제231회 임시회 7.7. ~ 7.21.(15일간)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광복절(8.15.)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232회 제1차 정례회 9.20. ~ 10.6.(17일간)
※ 추석연휴 9.9. ~ 9.12.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 개천절(10.3.), 한글날 대체휴일(10.10.)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233회 제2차 정례회 11.1. ~ 12.16.(46일간)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성탄절(12.25.)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소관상임위	조 례 명	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10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14
환경복지위원회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2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7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30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35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	38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41
산업건설위원회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44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47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51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54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8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64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66

1

울산광역시
만화 · 웹툰산업 진흥 조례

손종학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0. 28.] [울산광역시조례 제2485호, 2021. 10. 28., 제정]

1. 제정이유

만화 · 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 · 웹툰산업의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만화 · 웹툰산업을 활성화하여 만화 · 웹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만화 · 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제3조)

- 시장은 5년마다 만화 · 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만화 · 웹툰산업 진흥 사업 추진(제4조)

- 시장은 만화 · 웹툰산업 전문 진흥 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 울산광역시 만화 · 웹툰산업 진흥위원회(제5조부터 제8조까지)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라. 협력체계, 저변확대 및 사무위탁(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시장은 민 · 관 · 산학연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만화 · 웹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울산광역시 출자 ·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만화 · 웹툰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웹툰"은 법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제3조(만화·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웹툰산업 진흥 추진의 기본 방향
2.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만화·웹툰 창작 · 제작 및 창업지원
5.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6. 만화·웹툰산업 진흥기관의 설립 및 운영
7. 만화·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9.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산업 전문 진흥 기관(웹툰캠퍼스)의 설립과 운영

2. 만화·웹툰산업 민간 단체의 설립과 지원

3.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웹툰산업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주요 만화·웹툰산업 진흥 시책의 추진

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4. 민 · 관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관광체육국장

3.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 · 단체 · 학교 · 연구소의 대표자

4. 만화·웹툰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만화·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관계 기관 ·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만화·웹툰산업 진흥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 · 관 ·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저변확대 등) 시장은 만화·웹툰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만화·웹툰산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만화산업 진흥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출자 · 출연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고호근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2514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제3조)

-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행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 시장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사업 및 지원(제5조)

- 시장은 방사선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현장탐사, 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안전관리 조치(제6조)

- 시장은 방사선 측정 결과값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 현장의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사선비파괴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방사선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방사선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사선비파괴검사 현장탐사
2. 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3. 방사선 측정 안전장비 대여
4.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교육 및 홍보
5.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 구축

6.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 측정 결과값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옥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0. 28.][울산광역시조례 제2477호, 2021. 10. 28., 제정]

1. 제정이유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 환경기술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환경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시행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6조)

마. 환경산업육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환경산업의 육성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12조)

사.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조)

아.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출 지원 등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해야함을 규정함(제14조)

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 · 군, 환경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5조)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경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 군 및 관련 기관 ·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환경산업 실태조사의 추진
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유망환경산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산업체 임직원
3. 환경산업업무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산업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환경산업 클러스터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기업지원 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3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 ·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 · 군, 환경산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상옥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0. 28.][울산광역시조례 제2479호, 2021. 10. 28., 제정]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체계를 개선 · 보완하여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및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추진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의 근거를 규정함(제5조)

마.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바.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사. 사회서비스원의 재산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 ·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 · 회계 · 법무 · 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 · 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
7.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 개발 및 교육 지원

8.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명,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9조(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울산광역시 및 구 · 군의 사회서비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 · 세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 · 세출 결산보고에 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

제13조(위탁)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 감독)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 회계 · 재산 등에 관한 검사 ·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김시현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2. 4. 21.] [울산광역시조례 제2482호, 2021. 10. 28., 제정]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 교육홍보, 실태파악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중복지원 금지, 환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8조부터 11조까지)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단, 시장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 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7.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하여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 · 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서휘웅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2525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 관리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5조)

나. 건강검진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제7조)

다. 석면대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시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강검진 및 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및 그 밖에 석면 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3.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노출된 석면의 농도가 높아 향후 석면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및 석면피해자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석면 관련 건강검진 및 조사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피해 관련 건강검진 및 조사에 관한 세부실행계획
3. 석면피해 관련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 가공 등을 하였던 석면 사용 업체 및 석면 노출 업체 현황 조사
5. 그 밖에 석면피해 관련 시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대상지역)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 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 또는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 밖으로 거주지 등을 옮긴 경우를 포함한다.

1.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
2.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 업체의 가동 기간 내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에서 1년 이상 석면에 노출된 환경성 석면 노출자
3.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4. 그 밖에 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비용을 보상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 · 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2. 그 밖에 증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자체 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검사에 따른 비용을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차 검사 항목
   가. 흉부 엑스선 사진
   나. 혈액검사
   다. 진찰
2. 2차 검사 항목
   가. 폐기능 장해 검사
   나.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 진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석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건강검진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석면대책협의회)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지원 및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석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성 석면 노출자의 고위험군 해당여부 판단
2.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과 범위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4. 석면의 안전관리
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석면 관련 분야 및 의료 전문가
3. 석면 관련 유관기관, 의료시민단체, 환경단체 및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석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석면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이미영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2527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광역시를 만들고 나아가 친환경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광역시를 만들고 나아가 친환경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의 날”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플로깅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플로깅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 지원
2.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

장윤호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2528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 · 관리 및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로써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참여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함(제3조)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과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4조)

다. 무궁화 진흥사업의 범위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라. 무궁화 진흥을 위한 홍보물품의 제작 · 배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무궁화의 보급 · 관리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 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 관리 및 나눔활동
3. 무궁화 교육 · 연구 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 · 상품 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 · 군수 및 비영리 법인 ·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 · 군,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 ·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백운찬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2529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2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나. 시장의 책무(제3조)

-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다. 지원대상(제5조)

-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라. 사업추진(제6조)

-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상담, 직업훈련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마. 협력체계 구축(제8조)

- 시장은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바. 포상(제9조)

-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울산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황세영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0. 28.] [울산광역시조례 제2474호, 2021. 10. 28., 제정]

1. 제정이유

일반 세탁기로는 제거가 어려운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작업복세탁소의 설치 및 관리 ·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제3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함

나. 사업(제4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작업복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다. 이용료(제5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음

라. 지원(제6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사무의 위탁(제7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바. 협력체계 구축(제8조)

- 시장은 작업복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 · 군 및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관리 ·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업복세탁소”란 울산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복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작업복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작업복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료)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효율적인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업복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 · 군 및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작업복 세탁소 관리·운영	▪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일자리경제국

11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김성록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2517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에서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를 정의함(제2조)

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방법,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평가, 지정 취소를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제10조)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 · 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골목 단위의 경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울산광역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부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 · 교육 · 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김성록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2518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제2조)

나.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음(제5조)

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6조)

라. 시장은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지역기업의 ESG 경영 역량 제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경영 확산)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ESG 경영 지원위원회) 시장은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2. ESG 경영 확산 방안 및 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중소기업지원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구 · 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 · 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김성록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2. 6. 16.][울산광역시조례 제2519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제5조)

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제6조)

라. 시장은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7조)

마.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지원계획,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바.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13조)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이용 등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제2호의 가사근로자와 제3호의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부문별 정책추진전략
3. 지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 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 · 연구
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가사근로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4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도영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1. 12. 29.] [울산광역시조례 제2522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 운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 ·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대해 정의함 (제2조)

나.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 체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해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회계관리 원칙을 규정함(제15조)

사.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제17조)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공공기여 검증”이란 개발관련 사업계획 등에서 제시된 공공기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모든 시민에게 그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 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특별회계 전입금
4.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공급사업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3. 기금의 운용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 관리한다.

제7조(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 시장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개발사업 분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개발사업 및 주거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서면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안건의 관계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미래성장기반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지역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윤덕권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2. 3. 21.] [울산광역시조례 제2533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

나.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제4조)

다.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보건위생 교육 및 생리용품의 지원 등 교육감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7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 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생리용품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리용품 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2. 생리용품의 지원 기준 및 방법과 관리체계
3. 예산 및 재원 조달
4.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5. 그 밖에 생리용품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생리용품 지원
3.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여학생 생리용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김선미 의원 대표 발의

[시행 2022.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538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난치병이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치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순위를 규정함(제5조)

나. 난치병 치료비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다. 치료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라. 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마. 치료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바.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 ·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6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3. “난치병 학생”이란 난치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치료비 지원 대상 난치병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호에 따른 학생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우
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등)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바목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난치병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

가.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나. 특진료

다. 초음파 검사비

라.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비

마.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바. 상급병실료 차액

사. 식대

② 치료비는 지원 대상 난치병 학생 1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 학생 및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제5조에 따른 순위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은 소속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치료비의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중복 지원의 금지)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치료비의 환수)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치료비를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2.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난치병 학생 부모 대표

2. 의료·복지·법률 분야의 전문가

3. 학교 보건교사

4. 난치병 학생 지원·교육 업무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부서장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 업무 담당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타 자치단체 의원발의 조례

자치단체명	조 례 명	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2
강원도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7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80

1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29.] [부산광역시조례 제6531호, 2021. 12. 29., 제정]

1. 제정이유

가. 택배시장은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시급한 실정임.

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1.26.) 및 시행(`21.7.27)에 따른 생활물류 소관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실정에 맞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시역 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해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

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8조)

사. 생활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아. 생활물류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1조)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역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시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시장은 시역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라 한다)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및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물류쉼터의 확보)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항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항시 개방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시설물 이용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31.] [강원도조례 제4814호, 2021. 12. 31., 제정]

1. 제정이유

강원도 아동에 대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 치료 등의 치과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1조 제3조)
2.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3.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제8조)
4. 치과주치의 지정, 의료비 청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1조)
5. 권한 등의 위임 ·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3조)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아동에 대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 치료 등의 치과진료를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 ·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과진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강검사

   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다. 그 밖에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

4. “치과주치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아 아동에게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 중에서 보호자가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과진료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치과주치의에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치과주치의 지정) ① 치과주치의가 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도지사에게 치과주치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치과의사를 치과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치과주치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료비 청구)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치과진료를 한 치과주치의는 도지사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과주치의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치과진료를 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의료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하여 시 · 군,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시행 2021. 10. 1.] [대전광역시조례 제5714호, 2021. 10. 1., 제정]

1. 제정이유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나.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다.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하여 정함(제5조).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통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운영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홍보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페이지
경기도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8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관련)	96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 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109

1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의견21-0278, 2021. 10. 7. 경기도]

질의요지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지?

의 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서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사무를 법인등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해당 위 · 수탁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제11호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등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통근버스 운영을 사회적기업(각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위탁 운영하도록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적경제조

직’을 사회적기업(가목)과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제4호) 등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서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 지방세 감면(제13조)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이하 “제한입찰”이라 한다)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제한입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2호에서 중소기업자(각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중소기업자 중 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포함(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되기는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제한입찰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를 근거규정으로 삼아 통근버스 운영을 민간위탁하면서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입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제5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7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3조에서는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되,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는 통근버스 운영사업에 대한 위 · 수탁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나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을 특정하여 지명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사회적기업에 특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위탁하려는 통근버스 운영사업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근버스 운영사업의 수탁 대상자를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여 모집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 · 물적 ·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 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공고한 물품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삭제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 ·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 구매하는 경우

11.「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 원가계산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 8.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 원가계산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관련)

[의견21-0286, 2021. 10. 1. 인천광역시]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 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의 견

이 사안의 경우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과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합의제행정기관(각주: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조례의 규정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 과 · 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러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인천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시민참여위원회는 종합계획(각주: 인천시조례 제2조제2호의 반환공여구역과 같은 조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을 의미함(인천시조례 제2조제4호))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2호),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심의 ·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인천시조례 제3조에서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면서 “심의 ·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검토의 한 방법에 해당하고, “의결”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주체가 다수인 위원회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7. 2. 6. 의견제시 17-0033; 법제처 2014. 2. 24. 의견제시 14-0032 참조) 조례에서 “심의 ·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인천시조례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에 인천광역시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임위원이나 사무국 등 상설 조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9항제2호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캠프마켓과장의 분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

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 독자성 · 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 과 ·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 면 ·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 면 · 동에 연접한 읍 · 면 · 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 면 · 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 · 면 · 동에 연접한 읍 · 면 · 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 · 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9.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 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 · 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 ·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 · 의료 · 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 ·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시 ·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자)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 · 림 · 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

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 · 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 · 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 ·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4. “종합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명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
5.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시·구 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본청의 실장, 국장, 본부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은 실장, 국장, 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캠프마켓과, 도시경관건축과, 주택정책과를 둔다.

⑨ 캠프마켓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평캠프마켓 관련업무(토지취득 등 보상업무, 캠프마켓 내·외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전반)
2.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3. 군부대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3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의견21-0328, 2021. 11. 10. 전라남도 목포시]

질의요지

가. 목포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을 실시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목포시에 소재한 대학 외에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면) 전입대학생 지원금 지원대상 범위를 조례로 정하면서 “목포권 소재 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 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목포권에 포함하려는 범위를 특정하여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등에게 직접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보조사업의 내용 및 성격, 해당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목포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종전에 “목포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6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3회에 나누어 지급(이하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이라 한다)하되, 전입신고 시 20만원, 전입신고 이후 1년 주소 유지 시 20만원, 전입신고 이후 2년 주소 유지 시 2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제8조제2호 및 별표)하고 있던 것을 “목포권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입대학생 지원시책 대상자가 목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한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주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로 전입대학생 지원시책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질의 내용과 같이 목포시 근처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목포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목포시조례안에서는 전입대학생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요건으로 목포시로의 전입신고라는 요건 외에 대학교 재학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재한 대학의 입학 촉진을 통한 인구증가를 고려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바, 비록 목포시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목포시에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라 하더라도 목포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목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입대학생 지원시책의 취지에 부합한지, 다른 지원 대상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는 측면은 없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조례·규칙을 포함한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규정하면서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를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포권’은 일반적으로 목포를 중심으로 생활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법령이나 관련 조례 상 그 범위가 특정된 것은 없어 보이고, 다만 「전라남도 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목포권 진료구역을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목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다른 법령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의 규칙이 목포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규정 형식 상 조례에서 하위 법령인 규칙을 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라남도 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근거로 목포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조례안에 따르면 목포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이 어디 소재하느냐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포시조례안에서 ‘목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목포권 소재 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목포권에 포함하려는 범위를 특정하여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 개정 ·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④ 삭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3. 삭제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삭제

주요 시행 법령 (2021.10월 ~ 12월까지 시행법령)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0.8.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2021.10.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2021.10.21.
「건축법」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2021.11.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2021.11.18.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2021.11.19.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2021.11.19.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2021.12.9.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2021.12.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2021.12.31.

붙임

주요내용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10월 8일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함.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개정, 10월 14일 시행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10월 21일 시행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건축법」개정, 11월 11일 시행

○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개정, 11월 18일 시행

○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 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함)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19일 시행

○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의 추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근로기준법」개정, 11월 19일 시행

ㅇ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ㅇ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

ㅇ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법」개정, 12월 9일 시행

ㅇ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식품위생법」개정, 12월 30일 시행

ㅇ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함.

*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ㅇ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식품 등의 위해 때문에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2월 31일 시행

ㅇ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함.

ㅇ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구제급여 신청 · 결정 · 심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

ㅇ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 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 · 징수함.

법령해석 사례

질의자	주 요 내 용	페이지
민원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124
민원인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 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129
교육부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135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해석 21-0242, 2021. 11. 9. 민원인]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각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각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추가모집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적용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추가가입하려는 사람이 해당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격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2조제2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가입하려는 사람이 해당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는 기본행위인 조합원 추가 또는 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각주: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례 참조)로서, 이러한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추가모집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추가모집에 대한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있기 전에는 해당 가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각주: 해당 규정은 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7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서 제38조제2항으로 신설되었으며, 그 후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현행과 같이 제21조제2항으로 이동하였음(규정내용은 신설될 당시와 동일함))의 입법 취지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각주: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95호(입법예고문) 참조)이므로, 해당 규정은 이미 주택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통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 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신규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까지 자격 요건의 유지가 필요한 기간에 세대주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적용 대상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조합 추가가입 신청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11조의6 및 제14조의2제2항 등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택조합 조합원과 가입 신청자를 구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추가모집함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⑨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생 략)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 · 3. (생 략)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22조(지역 ·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 · 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2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 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해석 21-0458, 2021. 12. 8. 민원인]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각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는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각주: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 축사 등이 있는 시 · 구 · 읍 ·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구 · 읍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농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나.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안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의미나 “총부지의 면적”의 산정 대상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총부지의 면적”에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먼저 「농지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시 ·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9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녹지지역을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여 농지 외의 토지도 녹지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녹지지역 관련 규정만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농지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의 농업진흥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를 대상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이러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도 마찬가지로 농지와 비농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농지법령에는 그 부지 면적의 판단 기준을 농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콩나물재배사의 총면적 산정도 비농지를 제외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바, 총부지 면적 관련 규정은 그러한 행위 제한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례 참조), ‘총부지’에 비농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농지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부분이 제외되어 인근 농지의 토양이나 관개 ·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콩나물재배사의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 면적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의미나 “총부지의 면적”의 산정 대상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총부지의 면적”에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농업용 시설로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칙적으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한 것(각주: 2002. 4. 11. 농림부령 제1412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례 참조), 해당 규정에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 면적을 ‘농업진흥구역’ 안의 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콩나물재배사를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에 걸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콩나물재배사의 부지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인데, ‘총부지’에 농업진흥구역 밖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해당 농업용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연접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업 생산 및 농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총부지’의 범위에서 농업진흥구역 밖의 면적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의 부지 면적에 관한 「농지법 시행령」의 다른 규정의 입법연혁과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완화한 것(각주: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이와 같이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 제3호나목 및 다목),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제29조제2항제3호, 제4항제2호, 제5항제5호, 제7항제2호부터 제4호의2까지, 제6호, 제8호가목 및 나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에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 9. (생 략)

② ~ ④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④ (생 략)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 축사 등이 있는 시 · 구 · 읍 ·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구 · 읍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 7. (생 략)

⑥ · ⑦ (생 략)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농업 · 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 · 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

1. ~ 3. (생 략)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3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해석 21-0622, 2021. 12. 23. 민원인]

질의요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가.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각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그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지?

나.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각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에게 주 ·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그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지?

질의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제22조 등에서는 유치원의 시설 · 설비 등 설립기준, 유치원의 설립 · 운영 주체의 결격사유,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 폐쇄 명령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유아교육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한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각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호자(각주: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여 해당 시설에 유아교육을 맡길 우려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의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특정 시설의 명칭에 포함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해당 시설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각주: 법제처 2007. 3. 30. 회신 07-0052 해석례, 법제처 2007. 5. 11. 회신 07-0072 해석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례 등 참조)하는 것이 같은 법 제28조의2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되는 학교로서 그 교육대상이 유아인데, 펫(Pet)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반려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경우, 그 명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유아가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치원이라는 명칭 외에 광고나 간판 등

을 통해 위 시설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낮고,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더라도 실제 유아를 해당 시설에 입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제22조 등에서는 유치원의 시설 · 설비 등 설립기준, 유치원의 설립 · 운영 주체의 결격사유,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 폐쇄 명령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유아교육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한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여 해당 시설에 유아교육을 맡길 우려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의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특정 시설의 명칭에 포함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해당 시설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같은 법 제28조의2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되는 학교로서 그 교육대상이 유아인데, 이 사안과 같이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경우 그 명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유아가 아닌 노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치원이라는 명칭 외에 광고나 간판 등을 통해 위 시설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낮고,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하더라도 실제 유아를 해당 시설에 입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국가명	주 요 내 용	페이지
스페인	스페인, 「이민법」 개정(2021.10.)	142
독일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규정 강화(2021.11.)	143
베트남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2021.12.)	145

1 스페인
「이민법」 개정
(2021.10.)

스페인이 최근 「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 통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스페인 사회보장이민부는 동반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그간 존재했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럽국가의 표준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16세~18세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미성년자가 불법 체류 자격으로 성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 그룹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요건을 갖춘 서류 미비 미성년자에 대하여 자체 제도를 마련하여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18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이 취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의 체류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출국 시키지 않는다. 또한, 최초 체류 허가는 2년으로 연장되며, 갱신의 경우 3년으로 연장되었다. 더불어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조건'을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축소하였다.

출처: 스페인 일간지 파라인미그란테스

2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2021.11.)

2021년 10월 1일부터 스토킹(Nachstellung) 범죄에 대하여 강화된 규정을 포함한 개정 「형법(Strafgesetzbuch)」 제238조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끔직한 심리적 테러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스토킹범죄가 자주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정된 「형법」 제238조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완화: 까다로웠던 구성요건 조건으로 인해 그 동안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행위들도 이 번 개정과 함께 폭넓게 스토킹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형법 제238조제1항은 피해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속적인'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조문에서는 피해자의 생활을 '상당히' 위협하는 '반복적인'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

디지털스토킹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일반적인 스토킹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제재하고자 개정조문은 디지털스토킹 범죄를 명시화하였다(제238조제2항제

4호). 따라서 앞으로는 스토킹앱(Stalking apps)이나 스토커웨어(Stalkingware)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데이터를 스토킹하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된다.

중범죄에 대한 규정 신설: 개정된 형법 제238조제2항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히 중한 경우(besonders schwerer Fall)'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한 경우'란 △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을 스토킹하는 경우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등을 말한다.

출처: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ur Verbraucherschutz)

3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2021.12.)

베트남 부총리는 2021년 11월 26일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의정」 제103/2021/Nđ-CP호에 서명하였다.

해당 의정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베트남 정부는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최초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하반기 6개월간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하여 이 지원정책을 다시 채택하기로 하였다.

기존 신차 등록세는 「등록세에 관한 의정 제140/2016/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충 의정」 제20/2019/Nđ-CP호에 규정된 바가 있는데, 9인승 이하 승용차의 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신차 가격의 10%~12%이며, 반면에 적재량 1.5톤 이하 및 5인승 이하인 픽업차량, 적재량 1.5톤 이하 승합차는 9인승 이하 승용차 등록세의 60%를 납부하여야 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차량등록세 인하로 국민의 소비회복, 재산소유 장려, 베트남 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회복 및 생산·조립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2022년 6월 1일 이후 차량의 최초등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의정」

입법 정보 제74호

2022년 2월 발행
발행처 _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연락처 _ 052)229-5154
<비매품>